

1. 개정이유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‘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’ 운영 업무의 위탁 범위를 현행 농산물 중심에서 수산물 분야까지 확대하고, 소관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업무 범위를 기존 ‘농산물정보’에서 ‘농수산물정보’ 관련 업무로 확대하여 수산물 관련 비영리법인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43조제1항)
- 나. 법률상의 재량 규정과 일치하도록 시행령의 의무 규정(~위탁한다)을 재량 규정(~위탁할 수 있다)으로 개정하여 소관 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3조제1항)
- 다. 해양수산부장관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(안 제42조제6항 33의2.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농산물정보”를 “농수산물정보”로 하고, “위탁한다”를 “위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2조제6항에 3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3의2. 법 제10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권한의 위임) ①~⑤ (생략)	제42조(권한의 위임) ①~⑤ (현행과 같음)
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33. (생략)	1. ~ 33. (현행과 같음)
33의2. <u>삭제</u>	33의2. <u>법 제10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</u>
34. ~ 37. (생략)	34. ~ 37. (현행과 같음)
⑦·⑧ (생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
제43조(업무의 위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<u>농산물정보</u>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.	제43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수산물정보</u> ----- ----- <u>위탁할 수 있다.</u>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